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1 선고 2020가단1980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연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1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(1) 원고와 유한회사 C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은 2017. 9. 28.경 피고가 설치할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’이라 한다).
- (2)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과 관련하여,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가 2017. 8. 29.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위 E가 위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던 F에게 이를 송금하였고(이하 ‘2017. 8. 29.자 1억 원’이라 한다), ② 위 E가 2017. 12. 26.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(이하 ‘2017. 12. 26.자 1억 원’이라 한다), ③ 원고가 2018. 3. 13. 피고에게 2억 2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(이하 ‘2018. 3. 13.자 2억 2,000만 원’이라 한다).
- (3) 원고,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9. 6. 30.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고,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이 각 1억 원임을 상호 확인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, 2020. 3. 26.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,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,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3, 갑 제5호증, 을 제2, 3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 요지

가. 원고 주장 요지

이 사건 2017. 8. 29.자 1억 원과 2017. 12. 26.자 1억 원은 소외 회사와 원고가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고, 원고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2018. 3. 13.자 2억 2,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

있다(이하 이 사건 2018. 3. 13.자 2억 2,000만 원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2억 원을 ‘이 사건 2억 원’이라 한다).

나. 피고 주장 요지

이 사건 2017. 8. 29.자 1억 원과 2017. 12. 26.자 1억 원의 합계 2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E가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고, 2018. 3. 13.자 2억 2,000만 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며(원고와 소외 회사 : 각 1억 1,000만 원),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),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 판단

기초사실 기재와 같이,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로부터 피고 측에게 송금된 돈이 이 사건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2,000만 원(= 2017. 8. 29.자 1억 원 + 2017. 12. 26.자 1억 원 + 2018. 3. 13.자 2억 2,000만 원)임에도,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을 해제하면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이 각 1억 원임을 상호 확인하였을 뿐이고,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약정의 합의해제 후인 2020. 12. 2.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

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2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‘태양광발전소를 당초 약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투자하였다’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그 후 ‘자금 사정이 어려운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하였다’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위 통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2억 원이 ‘투자금’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피고가 2018. 3. 12.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2억 원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2,000만 원의 합계 2억 2,000만 원에 관하여 “A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”를 품목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억 원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.

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2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2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옥희